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영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18
------------------	--------

발의년월일 : 2016. 11.

발의자 : 김영미, 강희향,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차재홍, 한일용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안 제3조)
- 나.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6조)

3. 관계법규

- 가. 「혈액관리법」 제4조
- 나.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6. 11. 23. ~ 11. 28.(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현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현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현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현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현혈장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현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현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현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현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표창) 구청장은 현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혈액관리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12호, 2016.2.3., 일부개정]

제4조(현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현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현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제2조(현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현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현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현혈정신을 고취하고 현혈권장을 위하여 현혈의 날 또는 현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